

디엔비특약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의 정의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 회사의 보장개시

제12조 특약의 보험료

제13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제7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디엔비특약 약관

※ 이 특약의 약관 본문 내에서 참조하는 모든 법령은 별첨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지급금 관련 용어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타인의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시행하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및 동종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자가 (autologous)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조혈모세포의 공여자와 수혜자가 동일한 자가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 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이식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기증수술”이라 함은 타인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골수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기증수술”이라 함은 타인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말초혈액으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 11 조 [회사의 보장개시]에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제 3 조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기증수술을 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기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증급여금은 다른 보험계약을 합산하여 피보험자 1 명당 1 회에 한하여 200 만원을 최고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기준통화가 미합중국 통화인 경우는 미화 2,000 달러를 최고한도로 합니다)

구 분	지 급 금 액
기증급여금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자가(autologous)조혈모세포이식 및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여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 2.수술증명서
 - 3.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 1 항 제 2 호의 수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 6 조 [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기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기증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일 예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이 2024년 10월 8일(화)인 경우 10/9(수, 한글날), 10/12(토), 10/13(일)은 회사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10/8(화)부터 3영업일인 10/14(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②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약의 기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 “불확정 개념” : 법률요건에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게 서술된 것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이 특약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주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4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 “제 4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11조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1 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그러나 제 10 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 항의 경우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1 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한 때에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13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 11 조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 6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1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7 관 기타사항 등

제1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